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가단16444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수인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2. 7. 24.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 지급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22. 12. 27. 기준으로 합계 41,837,082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순번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험금액	보증내용
1	D	E (주)	2008.10.01. ~ 2010.09.30.	30,000,000원	설계사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 반환채무
2	F	G (주)	2009.10.15. ~ 2011.10.14.	10,000,000원	설계사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 반환채무

나.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2. 7.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I이 있었으므로, C의 상속분은 2/7 지분이다.

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유일한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2. 8. 24. 접수 제105391호로 2022. 7.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C은 위 협의분할이 이루어질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원고에게 구상금채무가 있는데,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의 소유로 귀속시킨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2/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의 경우 C은 피상속인인 망인의 사망으로 법률(민법 제1005조, 제187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원고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C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고 위 구상금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과 달리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을 제1 내지 3호증은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위 구상금채권은 확정된 판결 내지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인데 아직 그 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석동

별지 목록

[집합건물] 서울 강동구 제지하층 호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강동구

[도로명주소]

서울 강동구

벽돌조 경사슬래브위

기와지붕 3층

다세대주택

1층 82.19㎡

2층 82.19㎡

3층 82.19㎡

지층 82.19㎡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 강동구 대 188.7㎡

(전유부분인 건물의 표시)

1987년1월9일 제지하층 호 벽돌조 40.63㎡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188.7분의 23.32

